

## 목회자에 의한 성적 학대: 목회적 이해와 개입

안 태 길  
<실천신학·조교수>

회중들 또는 내담자들과의 성적 학대를 수반하는 목회 선상의 비행에 관한 고려는 에스겔서 곧,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대해 예언하도록 하 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르치신 다음의 구절들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 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 그러므로 목자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

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이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이다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 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겔 34:2 5, 7 10).

본고는 목회자들과 목회상담자들에 의한 성적 학대(또는 폭행)의 문제를 정의하고 설명하며, 종교 기관들 중 대표적인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정당한 반응들을 논함으로 피해자들을 도와줘야 할 우리의 책임적 행동을 격려하고자 한다.<sup>1</sup> 본고는 성적 학대를 “안수 유무에 불구하고 목회자가 영혼의 돌봄이란 영적 책임이 있는 교인, 내담자 또는 교회의 고용인과 성적 행위를 가질 때 발생하는 목회자의 성적 비행”으로 정의한다. 또한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는 본고의 연구 범주를 넘으므로 제외한다.

거의 모든 목회자들과 목회 관련 종사자들은 회중들 또는 내담자들과의 우정의 관계를 가지며 때때로 그들 중의 일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때로는 회중들이나 내담자들로부터 성적 도발이나 자극을 받을 수도 있으며, 어느 정도로는 거의 모든 목회자들과 목회 관련 종사자들이 성적 영역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감정적 또는 정서적인 면에서 목회 관계의 경계들(boundaries)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말들은 목회와 목회상담에 반하는 강력한 고발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 속에 있는 진리를 부인하는 것은 삶의 사실로서의 목회 비행들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낼 뿐이다. 목회자로서의 우리의 특수한 직업은, 여타 직업들과는 달리, 우리로 하여금 타자들의 삶의 가장 친밀하고 신성하며 연약한 일부 국면들 속으로 개입케 한다. 역설적으로 목회자들과 목회상담자들이 그들의 봉사나 지도를 받는

<sup>1</sup> 사정상 본고는 현재 미국 목회신학계에서 논해지고 있는 상황에 기초하며 연구 자료 또한 미국 목회신학 및 목회상담학계에서 출판된 자료에 기초함을 밝혀둔다. 미국적 상황에 기초하였다고 해서 한국적 상황과 유리되거나 무관한 것은 아닐 것이다.

자들과의 부적절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에 개입되고 마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은 이들이 일반인들보다 심지어는 그들에게 상담하러 찾아 온 내담자들의 배우자들보다도 더 쉽사리 내담자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이들만의 독특한 파워(power)의 연고 때문이다.

목회자의 직업상의 행위에 대해 당연한 책임을 요구하는 제도적 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과제는 이중적이다. 하나는 목회 관계의 고결한 특성(integrity)을 유지하는 일이며, 둘째는 그렇게 함으로 목회자들의 피해를 받기 쉬운 자들 곧, 회중들, 내담자들, 부교역자들, 학생들 등을 보호하는 것이다.

## A. 문제의 제기

목회자가 자신이 섬기는 회중, 실습을 지도하는 학생<sup>2</sup> 또는 자신이 채용한 부교역자와의 동료관계 또는 목회 관계를 성관계화(sexualizing)하면 관계의 경계(relationship boundary)를 위반하는 셈이다. 이러한 일이 목회 또는 상담 관계에서 발생하면 치료자(therapist)에 의한 치유관계를 위반한 것과 유사한 행위가 된다. 목회자가 부교역자나 학생과의 감독 또는 영적 지도 관계를 성관계화 할 때 그것은 일터에서의 성적 희롱이나 비슷한 일이며 직장에서의 성희롱에 관한 원칙들이 적용된다. 아동이나 십대 소년 소녀가 성적 접촉의 대상이 될 때의 상황은 소아에 대한 이상성욕(pedophilia) 또는 아동 성 학대 중 하나에 해당된다. 이것은 단지 비윤리적이고도 학대적일 뿐만 아니라 범죄적인 것이다.

목회자들/목회상담자들의 회중들/내담자들과의 성적 접촉은 그렇지

---

<sup>2</sup> 미국의 목회학계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임상감독들을 통해 신학생들을 위한 임상훈련을 실시한다. 이러한 훈련에는 ACPE를 통한 임상목회훈련, AAPC를 통한 목회상담 훈련 및 AAMFT를 통한 결혼과 가족치료 훈련 등이 있다.

않았으면 효과적이었을 목회 관계의 밑동을 잘라버리는 것이며 목회 관계에서 필수적인 신뢰의 위반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적 접촉 그 자체가 아니라 성적 행위가 목회 관계 안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목회 관계라는 특수한 경계를 넘는 것은 그것이 목회 관계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그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상이 엄청나다는 것 때문에 중요하다.

성적 경계를 침해한 행위들로는 성적인 표현들 또는 암시들(농담, 풍자, 초대 등), 손으로 만짐, 귀여운 듯 껴안음, 유혹, 키스, 성교, 강간 등이 포함되지만 꼭 이것들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오직 단 한번 또는 일련의 사건들 혹은 일정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친밀한 관계일 수도 있다. 목회자들이나 목회상담자들에 의해 교사된 이러한 접촉은 직업적 비행의 한 예로 종종 축소되거나 무시된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심령에 가해지는 충격적인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의 목회자에 의한 성적 학대에 관한 실제적인 통계자료는 나와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에도 1984년 이전까지는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매우 드물었다. 1984년의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연구 대상으로 선발된 목회자들 가운데 12.67%가 교인과 성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교단별, 신학적 기초, 및 성별에 따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들이 자신이 돌보는 교회의 회원인 성도들과의 성 관계를 맺는 비율은 유사 전문직종인 임상심리학자들의 내담자/환자들과의 성 관계 비율 5.5%(남성심리학자) 및 0.6%(여성 심리학자)와 비교해 볼 때 2배가 넘는다.<sup>3</sup>

학계의 유명인사, 교계의 유명 목사도 예외가 아니다.

켄터키 주 총회신문인 *Western Recorder* 誌는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의 이사장이며 Texas 주 Watauga 시에 위치한 Harvest Baptist

<sup>3</sup> Richard Allen Blackmon, "The Hazards of the Ministry," Ph.D. dissertatio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84.

Church의 담임목사 Ollin Collins가 교회의 두 명의 여성도들로부터 피소를 당했으며 서남침례신학교는 그를 이사장직에서 해임시켰고, 동교회 또한 Collins의 담임목사직을 정직 시켰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두 명의 여성은 32세의 Kimberlee Brokaw와 37세의 Lucy Thompson으로 그들은 개인적인 문제로 담임목사인 Collins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시간 중에 성 관계를 갖게 되었고, 이들은 Ollin Collins 목사 개인과 교회로서의 온 회중들을 상대로 수백만 불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sup>4</sup>

John H. Yoder는 미국 윤리학회장을 역임한 저명한 윤리학자로 Notre Dame 대학의 교수이다. 그는 부적절한 성적 행위 요구와 명백하고 분명한 성적 언어로 회롱 당했다는 8명의 여성의 제소로 소속 교단으로부터 목사직을 정직 당했으며 교회의 조처와 권고를 받아들여 정신치료를 받기로 동의하였다.

정신치료 전문가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Fuller 신학교의 대학원을 창설한 John Finch는 지난 20년 동안의 치료 기간동안 여성내담자들과의 “반복된 부도덕과 비행들”로 인해 정신치료사 자격증을 취소 당했으며, Fuller 신학교는 Finch의 이름을 건물들과 강좌에서 삭제하고 그와의 모든 유대를 단절하였다.

점차로 만연해 가는 목회자에 의한 성적 학대에 관해 조사한 전문가로 Marie M. Fortune은 중요하다. Fortune은 자신이 설립한 “성 및 가정 폭력예방 센터”에 지난 10년 동안 1,000건이 넘는 고발이 들어 왔음을 보고한다.<sup>5</sup> 전문가들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목회자들이 교인들과의 직접적인 성 관계를 맺는 비율은 1994년에는 10-2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sup>4</sup> “Southwestern trustee chair resigns abruptly,” *Western Recorder* (October 13, 1998), 제2면.

<sup>5</sup> CPSDV Newsletter (Seattle, WA: Center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Fall 1992).

되었으나,<sup>6</sup> 1998년에는 37%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sup>7</sup> *The Christian Century* 紙에 지난 수년 동안 기록된 목회자에 의한 성적 학대에 관한 사건들은 수십 건이 넘는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이 인구에 회자하는 비율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영혼의 인도자 또는 영적 아버지로 상징되는 목회자/목회상담자와 성 관계를 맺거나 성적 접촉을 당한 회중/내담자가 받는 심리적 영향은 엄청나다. 처음에는 내담자/회중은 특별한 관심을 받은 것으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행동에 “동의하는”(consenting)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회중/내담자는 삶의 힘든 시간, 위기의 때에 목회적 돌봄을 추구하였었으며 그래서 상처나 공격 등의 피해를 입기 쉬운 대단히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흔한 일이다.<sup>8</sup> 결국에는 피해를 당한 회중/내담자는 자신이 매우 필요로 하였던 목회 관계가 거부당했음을 자각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느낌을 갖기 시작한다. 목회자의 특별한 관심(?)의 수혜자는 이제 배신감, 속았다는 기분, 피해의식, 혼동, 당혹과 두려움 등의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하고, 마음속으로

---

<sup>6</sup> 다음의 책들을 보라. Marie M. Fortune, *Is Nothing Sacred?: When Sex Invades The Pastoral Relationship* (San Francisco, CA: Harper Collins Publishers, 1989). G. Lloyd Rediger, *Ministry and Sexuality: Cases, Counseling, and Care* (Minneapolis, MN: Fortress, 1990). R. T. Brock and H. C. Lukens, “Affair Prevention in the Ministry,”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Vol. 8, No. 4 (1989), 44-45.

<sup>7</sup> Perry C. Francis and Tracy D. Baldo, “Narcissistic Measures of Lutheran Clergy Who Self Reported Committing Sexual Misconduct,” *Pastoral Psychology*, Vol. 47, No. 2 (November, 1998), 82.

<sup>8</sup> 많은 전문가들과 본인의 상담 경험에 의하면, 목회자나 목회 상담자로부터 성적으로 이용당한 피해자들은 대개 그전까지 한 번도 말해내지 못한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를 당한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다. 아동 성 학대의 생존자라는 사실은 또 한 번 당하는 성적 학대에 더욱 민감해지게 하고 상처와 고통이 주는 파워는 과거의 것과 맞물려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피해자를 몰아간다. 따라서 상처나 공격 등에 더욱 더 큰 아픔을 겪을 가능성이 증가되기 마련이다.

비난받을 준비를 하며, 그리고 이 무렵쯤이 되어서는 어느 누구와도 이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으며 그래서 사람들과의 교제를 피하고 스스로 자신을 소외시킨다. 마침내 분노가 수면에 떠오를 때가 되어서야 개인은 침묵을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한다.

심리적인 영향들에 더하여 영적인 영향들도 엄청나게 많다. 심리적인 고통은 확장되어서 온 우주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피해를 당한 회중/내담자는 단지 하나님을 대표하는 한 사람에 의해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또는 회당)에 의해서도 배신을 당한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목회자/상담자는 파워(power)가 강한 인물이며 따라서 심리적 및 도덕적으로도 쉽게 이용당하거나 학대당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엄청난 혼동과 죄책감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우리 목사님은 사랑은 결코 잘못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또는, “목사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범죄 함으로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위기는 신앙의 위기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위험도는 영역과 정도를 더해간다.

목회자, 특히 안수 받은 목회자의 역할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치유하는 자원들을 향해 인도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목회자 또는 상담자로서의 자신의 직분을 이용하여 그리스도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찬양과 애착의 대상으로 할 때 그러한 짓은 목사의 직무에 대한 신뢰의 위반이며 배신적 행위이다. 어떤 신학도 성 관계를 목회의 타당한 형태로 지지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한 개인의 목사 또는 목회상담자이면서 그와 동시에 성적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목회자에게는 권위가 있으며 목회 관계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고 성적 위반은 잘못이다.

## B. 목회자에 의한 성적 학대의 이해

현대 목회상담 운동은 목회자의 성폭행/학대에 대해 심리학적 설명들을 제공해주는 친밀함(intimacy)과 성(sexuality)에 관한 많은 문헌들을 생산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파워(power)를 강조하고 동일한 행위들을 “목사의 학대”로 부르는 최근의 여성 신학자와 여성 해방 운동가들의 문헌과 갈등관계를 이룬다. 이 두 가지 접근법들이 반드시 서로 갈등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목회자에 의한 성적 학대” 관계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관해 서로 갈등과 대립적인 정치적 입장들을 대변한다.

### 가. 목회자의 성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들

목회상담에 관한 문헌들은 목회자에 의한 성적 학대를 친밀과 성(intimacy and sexuality)의 문제로 해석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두 가지 점들이 그것을 예시한다.

어떤 논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였다. “이혼한 지 일년이 채 못되어 한 목회자가 그가 섬기는 교회의 한 여성도와 성적으로 관계함으로 직업상의 자살을 범하였다.”<sup>9</sup> 이 글의 저자는 목회 또는 목회상담 관계에서 발생하는 性愛의 再起 문제를 위기의 와중에서 일어난 것으로 예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른 예들을 소개한다. 이 글의 논지는 상실의 위기는 종종 때로는 부적절한 관능적 애착으로 전개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한 교인과 성적으로 관계한 목회자는 이혼으로 인한 비탄의 감정(grief)이 미해결된 사람으로 제시되었다. 바로 이러한 설명이 독자들로 하여금 “목회자에 의한 성적 학대” 문제를 학대(abuse)라는 본질에서 떠

<sup>9</sup> E. Wayne Hill, “The Resurgence of the Erotic in the Context of Loss: Implications for Pastoral Counseling,”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Vol. 46, No. 3 (1992), 237.

나 위기와 성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로 잘못 인도한다.

동 잡지에서 또 다른 저자는 “남성 목사들과 여성 교인들간의 관계들의 왜곡”을 탐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토록 열렬히 친밀함을 추구하면서도 아직 친밀을 즐기는 사람들이 드문 시대에, 교인들에게 민감히 반응하고 공감적이며 주의를 다하는 목사는 예상치 못한 큐피드의 화살들로 복잡해진 인간애의 따스함과 현재 함(presence)이란 선물을 발견한다. ‘우리는 목회 관계를 어떻게 참된 목회의 원천인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희생시키지 않고 낭만적이고도 성적인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sup>10</sup>

이 글의 저자는 목회자의 윤리적 침해를 논하고자 하였지만 이 문제가 심리적 역전이(counter transference)에 관한 문제인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가부장제도와 관련된 학대로서의 정치적 문제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성(sexuality)에 관한 문제로 호도해 버린다. 이 글에 의하면 사람들이 친밀해질 때마다 성적 개입이 “그저 일어나는”(just happens)것 같다. 이 글에 나타난 저자의 중심적인 질문은 어떻게 남성 목사들이 그들의 권한(power)을 남용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목회에 있어서 “낭만적이고도 성적인 오염”의 발생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다른 예들에서도 위와 같은 요점 곧, 목회상담자들이 목회자의 성적 학대 문제를 남자와 여자의 성(gender) 관계들 속의 파워(power) 문제와 성(sexuality)의 사회적 구조들에 대한 파워 문제로 분석하지 않을 때, 학대라는 본질적 주제는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될 것임을 쉽게 간파할 수

<sup>10</sup> J. Steven Muse, “Faith, Hope and the ‘Urge to Merge’ in Pastoral Ministry: Some Countertransference related Distortions of Relationships Between Male Pastors and Their Female Parishioners,”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Vol. 46, No. 3 (1992), 299.

있다. 상기에서 소개한 두 논문은 일부 목회자의 성적 행위들은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둘 중 어느 것도 피해자들의 관점에서부터 상처(damage)를 논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를 목회자의 관점에서 비추어 보고 성 본능(libido) 또는 성 에너지의 정신 내적 문제인 것으로 분석함으로써 학대적 및 사회 계급적인 구조들을 수용하고 강화시켜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 나. 성적 학대에 대한 여성신학자들의 이해

목회자의 성적 학대의 근저를 이해하는 데는 현대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폭력에 관해 논한 여성신학자들의 글이 도움이 된다. 그들은 피해를 입은 여성의 입장에서 논하며, 남성 신학자들보다 더욱 피해자와의 동일시와 공감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피해를 입은 여성의 입장에서 논한 글이 이 문제의 근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폭력에 대한 여성신학자들의 글은 가부장제(patriarchy)하의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억압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한다. 가부장제라는 남성 지배의 이데올로기는 여성들의 경험에서는 하나의 지속적 현실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Adrienne Rich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가부장제는 아버지들의 힘이다. ... 여자가 하여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남자들이 결정하는 제도로 이제도 안에서 여자는 어디에서든 남자에게 종속된다... 나의 지위나 상황, 나의 경제적 계층, 또는 나의 성적 선호가 어떠하든, 나는 아버지의 힘 아래서 살아야 하고 오직 가부장제가 기꺼이 허락하는 범위만큼의 특권이 나 영향력을 가지며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남자의 인정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여야만 할 것이다.<sup>11</sup>

<sup>11</sup> Adrienne Rich, *Of Women Born: Motherhood as Experience and Institution* (New York: Norton, 1976), 57 58.

Bell Hooks에 의하면 미국 사회의 가부장제는 인종차별주의와 맞물려진 억압의 체제로 이해하여야 마땅할 것 같다.

흑인 여성 노예의 경험을 반성적으로 조사해 볼 때, 성차별주의가 흑인 여성들의 삶에 있어 억압적인 세력으로 그 거대한 모습을 드러낸다. 제도화된 성차별주의 곧, 가부장제는 인종적 제국주의와 함께 미국인의 사회적 구조의 기반을 형성하였다.<sup>12</sup>

이러한 서로 맞물리는 억압들이 행사되는 방도의 하나가 폭력, 특히 강간, 근친상간, 및 다른 형태의 성적 폭력이다. 강간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모든 여성들에게 의식적 및 무의식적으로 언제나 동반되는 현실이다. 여성은 길가에서든 지인들의 범주 내에서든 또는 가족 안에서든 공격당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 모든 남성들이 강탈하려고 하므로 여성들이 두려움에서 별별 떠난다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강간이라는 현실 그 자체가 존재하는 한 여성들은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Hester Eisenstein의 다음의 말을 들어보자.

여성의 마음속에 있는 강간의 가능성에 대한 지식은 강력한 형태의 사회적 통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지식의 생명력을 위해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을 강간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일은 오직 소수의 남성들에 의해 저질러질 수 있다... ‘강간을 범하는 남성들은 사실상 온 세계가 지금까지 알아 온 가장 오래된 전쟁의 최일선 남성 특공대들이며 폭력 유격대들로 기능해 왔다.’<sup>13</sup>

또한 Hooks는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폭력 사실들이 미국인의 영혼, 곧 마음의 상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관해 보다 복잡

<sup>12</sup> Bell Hooks, *Ain't I a Woman?* (Boston: South End Press, 1981), 15.

<sup>13</sup> Hester Eisenstein,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New York: Simon & Schuster, 1975), 30.

한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재차 주장한다.

멀리 노예제도로 거슬러 올라가 백인들은 백인 남성들을 제1급, 백인 여성을 제2급, 이따금 제3급인 흑인 남성들과 동등하게 취급하였지만 흑인 여성들을 최하인 제4급으로 서열을 정한 인종과 섹스(sex)에 기초한 사회적 계층을 확립하였다. 강간의 성적 정치학이란 면에서 비추어 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만약 한 백인 여성이 한 흑인 남성에 의해 강간당한다면, 그것은 수천 명의 흑인 여성들이 한 명의 백인 남성에 의해 강간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주목할만한 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sup>14</sup>

이렇게 얽힌 인종적이고도 성적인 정치는 남성 지배 가족구조를 만든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해답은 소유를 통한 남성의 보호에 있다는 주장이 있다. 여성이 결혼을 통해 가족 안의 남성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받는 것은 아마도 길거리에서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짐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는 바는 결혼과 가족이 실제적으로는 여성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으며 때로는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계에 의하면 가족 밖에서보다 가족 안에서 성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이 더 많다.<sup>15</sup> 그래서 소유의 개념을 통한 남성 보호보다는 남성 지배가 더 맞는 표현이겠다. 이런 점에서 봐 결혼과 가족은 성폭력을 통한 여성의 남성에 대한 복종을 강화시키는 주요 제도들이라고 주장하는 여성학자들이 있다.<sup>16</sup>

여성의 억압은 경제적 착취를 통해서도 강화된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결혼을 하고 낮은 임금의 직종에서 일하도록 강요된다. 현대사회에서도

<sup>14</sup> Hooks, 52 53.

<sup>15</sup> Diana Russell, *The Secret Trauma* (New York: Basic Books, 1986), 60.

<sup>16</sup> Hester Eisenstein, "Rape: All American Crime," *Ramparts*, Vol. 10 (1971), 31.

대부분의 여성들은 “비서들, 가정부들, 간호사들, 타이피스트들, 전화교환수들, 보모들, 여급들과 같은” 경제적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수평적으로 뻗어있는 직종들에 채용되어 있다.<sup>17</sup> 그렇게도 복잡하고도 수많은 구실들을 통해 여성들의 취업과 교육적 기회들을 빼앗는다는 것은 여성들이 그들의 현재 직장에서 꼼짝못하게 되어 있어 그들이 현재 받고 있는 대우 조건을 도전해 볼만한 여력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 세계는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하도록 강요한다.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그리고 사회적 계층주의는 결합하여 특히 유색 여성들을 착취한다. Bell Hooks와 다른 여성학자들에 의하면 인종적 단합도 남성 폭력의 성차별 억압으로부터 유색 여성들을 보호하지 못한다.<sup>18</sup> 미국 흑인 여성들에 대한 경제적 착취는 종종 성차별적 폭력의 피해라는 것이 점점 많이 노출되고 있다. 노동자 계층에서부터 전문직종으로 가까스로 상승한 소수의 여성들도 여전히 남성지배의 직장과 기관들에서 성적 희롱과 경제적 착취를 당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여성신학자들, 여성해방신학자들 및 여성학자들에 의하면, 폭력과 경제적 착취의 가부장적 세력들은 Adrienne Rich가 Catherine MacKinnon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책, *Sexual Harassment of Working Women*에서 “여성의 성욕대상화”(the sexualization of women)라고 칭한 다른 형태의 가부장적 억압과 서로 맞물려 있다.<sup>19</sup> 살아남기 위해서 여성들은 그들의 노동과 성을 통제하는 가부장제도를 수용해야 한다. 남자가 여자보다 모든 면에서 우세하며 따라서 성적 희롱과 경제적 착취를 위한 무대가 이

<sup>17</sup> Adrienne Rich, “Compulsory Heterosexuality and Lesbian Existence,” *The Sign Reader: Women, Gender and Scholarship*, ed. Elizabeth and Emily Abe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149.

<sup>18</sup> Hooks, 88.

<sup>19</sup> Adrienne Rich, “Compulsory Heterosexuality and Lesbian Existence,” *Sexual Harassment of Working Wome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79), 149.

미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Adrienne Rich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여성들은 여급이든 교수이든 경제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데, 자신들의 일터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직무가 어떠한 것이든 이것이 그들의 취업을 위한 진정한 자격조건임을 발견하기 때문에 상냥하고도 영합적인 異性愛적 태도로 처신하기를 배우고 성적 희롱을 견뎌낸다... 이것이 가르쳐주는 사실은 직장이란, 여타 사회 기관들 가운데서도, 여성이 자신의 정신적이고도 신체적인 경계가 남성에게 의해 침해당하는 것을 생존을 위해 치뤄야 할 대가인 것으로 받아들여도록 배운 곳이라는 것이다.<sup>20</sup>

가부장제도의 결과로 여성의 노동에 성적특질이 부여되고 여성의 종속은 에로틱하게 성적 자극화 되었다.<sup>21</sup>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남성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들의 힘(power)을 현재의 지배체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사용하며, 남성들은 여성들이 에로틱한 경험에의 피해자가 되게 하려는 식으로 힘을 행사할 만큼 사회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힘과 지배의 체계로서의 가부장제에 의해 조직된 것은 남성의 성적 욕망으로 내면화되고, 이것은 그 다음에 강박관념들과 환상들을 통해 여성에게 투사된다. 이러한 사회화를 거부하는 남성들은 가부장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만약 불평등이 남자와 여자의 성, 남성다움 및 여성다움, 섹시함과 異性愛的 매력의 사회적 관념화로 구축된다면 어떻게 될까? 성희롱 사건들은 남성의 성욕 그 자체가 여성의 취약성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남성들은 여성들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느끼고(feel), 그래서 원하고(want), 그래서 행한다(do).<sup>22</sup>

<sup>20</sup> Ibid., 150 151.

<sup>21</sup> Ibid., 151.

<sup>22</sup> Ibid.

여성학자들에 의하면 가부장제는 남성 학대자들이 가족, 직장 및 도처에서 성적대상화(sexualization), 폭력 및 경제적 착취와 서로 맞물려 여성들을 착취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체계(system)이다. 여성 아동들의 1/3 이상이 성폭행을 당했으며 모든 여성들의 과반수가 강간 또는 강간 미수를 겪었다. 그렇지만 오직 소수만이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비난, 노출 또는 투옥이란 결과를 직면한다. Diane Russell에 의하면 강간자들과 아동 치한들이 체포되어 범죄의 심판을 받는 비율은 1% 미만에 지나지 않는다.<sup>23</sup> Angela Davis는 미국 사회에서 대다수의 성폭행들이 은밀히 숨겨진 사실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다.

익명의 강간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 이러한 익명성이 그들의 지위로 그들 강간자들을 기소로부터 보호해주는 남성들이 즐기는 하나의 특권이 아닌가? ... 사실상 자본가와 중산층의 남성들은 그들의 하층 노동자들의 노동과 존엄성에 대한 일상적 공격들을 합법화해 주는 것과 동일한 도전 받지 않는 권위를 자신들의 성적 공격들에 부여했기 때문에 기소에 면제되어 있다... 자본주의의 계급 구조는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 힘을 행사하는 남성들로 하여금 성적 착취의 일상적 행위자가 되도록 격려한다.<sup>24</sup>

<sup>23</sup> Diana Russell, *Sexual Exploitation: Rape, Child Sexual Abuse, and Sexual Harassment* (Beverly Hills, CA: Sage, 1984). Judith Herman, *Trauma and Recovery* (New York: Harper/Collins, 1992), 73에서 재인용. 아동 성 학대, 성인 강간 및 기타 성폭행들에 관한 자료는 Diana Russell과 관련 자료들에서 나온 것이다.

<sup>24</sup> Angela Davis, *Women, Race and Class* (New York: Vintage Books, 1983), 199-200. 성희롱, 경제적 착취, 인종차별적 정치 관계에 관한 보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Toni Morrison, ed. *Race and Justice, Engendering Power: Essays on Anita Hill, Clarence Thomas, and the Construction of Social Reality* (New York: Pantheon Books, 1992), 및 Robert Crisman and Robert Allen, eds., *Court of Appeal* (New York: Ballantine, 1992), Bell Hooks, *Ain't I a Woman?* (Boston: South End Press, 1981)을 참조하라.

익명의 강간자들을 정의의 심판대 앞으로 데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지위가 그들을 기소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높은 지위와 특권을 가진 남성들이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착취하였는지를 드러내는 것은 가부장제가 착취 위에 건설되어있음을 나타내 줄 것이다. 가부장제는 여성에 대한 성적 및 경제적 착취 시스템이며 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이 시스템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남성들은 보호받고 있다.

여성신학자들과 여성해방론자 및 여성학자들의 주장들을 본인이 이해한 바대로 요약한다면, 가부장제는 경제적 착취, 폭력 및 여성들을 성적대상화 하는 것을 포함하는 연합된 세력들을 통해 강화되었다. 강간, 근친상간 및 전문적인 성적 학대에 있어서의 성적 폭력행위에 대한 설명은 이러한 체계로부터 시작된다. 성적 착취는 다른 경우라면 공평하고 정의로웠을 교제와 대인관계들의 체계가 일탈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폭력은 여성과 아동의 종속 위에 기초해 있으며 그리고 이것이 유색인종, 가난한 자, 그리고 기타 그룹들의 억압과 맞물려 있는 하나의 가부장적, 자본주의적 체계의 통합된 부분이다.

여성들이 많은 戰線에서 가부장제에 도전을 하고 있는 때에 여성들에 대한 폭력적 공격들과 성적이고도 경제적인 착취는 오히려 점점 증가해가고 있다. 가부장제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통해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을 피해자로 남성을 가해자로 만드는 이 체계를 파괴하는 한 걸음이 될 것이다. 그것은 Pamela Cooper White이 말하듯 벽장 속에 숨겨둔 이러한 사실들을 “빛 속으로 가져오는 것은 능력부여(empowerment)의 하나”가 된다.<sup>25</sup> 그것은 바로 아는 것이 힘이 되기 때문이다.

<sup>25</sup> Pamela Cooper White, “Soul Stealing: Power Relations in Pastoral Sexual Abuse,” *The Christian Century* (February 20, 1991), 196.

### 다. 목회자에 의한 성적학대: 권한의 남용

목회자들이 교인들과 내담자들과의 성적이거나 낭만적인 관계들을 갖는 것은 주로 섹스(sex)나 성별(sexuality)의 문제가 아니라 파워와 통제에 관한 문제이다. 비록 간음(adultery)의 문제가 개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결혼 관계에 대한 불충실함이나 부정(infidelity)이 주요 논점들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한 목회자의 성적 비행을 연구한 목회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거의 한결같이 목회자의 권한의 남용(the abuse of power)<sup>26</sup> 문제와 결부한다. 그것은 목회자, 특히 안수 받은 목회자와 여자 성도간의 성적 또는 낭만적 관계는 처음부터 두 당사자간에 “힘의 불균형”(an imbalance of power)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Marie Fortune이 논파했듯이 진정한 동의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27</sup>

목회자에 의한 성적학대 관계에서 권한의 남용(the abuse of power)을 논한 학자로 Karen Lebacqz과 Ronald Barton이 중요하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의 친밀(intimacy)을 4년 동안 연구한 결과 발견한 것을 자신들의 책 *Sex in the Parish*에서 논하였다.<sup>28</sup> 두 저자들의 주장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교인들과의 적절한 직업상의 경계들을(boundaries) 유지하는 것

<sup>26</sup> 예를 들면, James N. Poling, *The Abuse of Power: A Theological Problem* (Nashville: Abingdon Press, 1991). Candace R. Benyei, *Understanding Clergy Misconduct in Religious Systems: Scapegoating, Family Secrets, and the Abuse of Power* (New York: The Haworth Pastoral Press, 1998). 본 난에서 The abuse of power를 권한의 남용으로 번역한다. 물론 때로는 power를 ‘힘, 파워’로 abuse를 ‘학대’로 번역할 것이다.

<sup>27</sup> Fortune, *Is Nothing Sacred?*, 101-102. Fortune은 목사(목회자)는 전문가로서의 훈련, 신임, 은사들 및 교인들이 준 계약으로부터 나오는 힘과 권위(power and authority)외에 상징적인 힘까지 있어 평신도들과 불균형적인 파워를 갖고 있음을 지적한다. 상징적인 힘이란 목회자가 전 신앙공동체, 교회의 전통, 삶의 의미를 바라보는 체계, 및 하나님을 신체적인 면에서 대표한다는 뜻이다.

<sup>28</sup> Karen Lebacqz and Ronald G. Barton, *Sex in the Parish*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1), 93-112를 참조하라.

이 중요함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 그들의 직관들(intuitions)을 지지해주거나 도전해 줄 윤리적 틀이 부족함을 지적한다. 두 저자에 의하면 이 문제에 관한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자신들의 양심이 인도해 줄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반응은 자신들은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그른지를 안다는 단순한 것이다. 그러나 Lebacqz와 Barton은 경계와 한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양심이 언제나 믿을만한 안내자라고는 믿을 수 없으며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그리고 가해자로서의 목회자와 피해자로서의 교인인 개인들 뿐만이 아니라 제도로서의 교회도 목회자와 교인간의 성관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윤리적 이론적 근거(rationale)를 필요로 하며 Lebacqz와 Barton이 제시하는 것은 이러한 윤리적이며 이론적인 근거이다.

목회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파워를 지각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두 저자는 목회자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힘의 문제에 초점을 둔다. 목회자들은 자유의 힘(power of freedom), 곧 다른 사람들의 계속적인 감독이나 감시를 받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자유 및 접근과 접근할 수 있음의 힘(power of access and accessibility), 곧 돌봄을 제공하는 직업과 오랫동안 관련되어온 것에서부터 나오는 교인들의 개인적 삶에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다는 접근의 특권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힘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들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힘이다.

Lebacqz와 Barton이 논하는 두 가지의 힘 이외에 Donald E. Capps는 지식의 힘(the power of knowledge)을 더한다. Capps에 의하면, 목회자들은 회중의 가족들에 대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이 가족들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목회자들은 종종 상담자나 치료자들이 내담자들에 대해 몇 주가 걸려서야 알아낼 수 있는 종류의 정보도 단번에 입수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이러한 지식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지는 않을지라도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그

렇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여성도의 남편이 지적 및 사회적인 기술면에서 그의 아내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목사는 무의식적으로 지적이고도 이해심 있는 말을 할 상대를 필요로 하는 그녀의 욕구를 만족시켜줌으로 그녀와의 인간관계 면에서 그녀의 남편보다 한 발 앞서게 된다.<sup>29</sup>

Lebacqz와 Barton에게 있어서 윤리적 문제는 이러한 목사의 힘을 오용하는 것이다. 목사에게 있는 힘의 오용, 곧 목사의 권한의 남용 문제를 논하기 위해 두 사람은 의료 윤리에 의존하는데 그것은 의료 윤리에 서처럼 목회윤리의 중심적인 주안점이 동의(consent)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의료적 상황에서 동의에 관한 문제들은 환자가 의사로부터 질병을 치료받을 때 그것에 관한 모든 정보를 듣고 환자가 자유롭게 판단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을 말한다(informed consent).<sup>30</sup> 이에 대한 예외사항은 응급사항, 무능력, 권리 포기, 및 치료적 특권이 대개 인용된다. 이러한 사항들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치료적 특권으로, 이것은 가족주의적이어서 환자의 자율성을 분명히 침해하는 경향이 많다.<sup>31</sup>

Lebacqz와 Barton는 교구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목회자가 교인과의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에 대한 동의(consent)에 있어서

<sup>29</sup> Donald Capps, "Sex in the Parish: Social Scientific Explanations for Why It Occurs,"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Vol. 47, No. 4 (Winter, 1993), 352.

<sup>30</sup> Paul Ramsey, *The Patient as a Pers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0). "(치료자/의사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아) 알고서 동의함"(informed consent)과 정신치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orace C. Lukens, "Essential Elements for Ethical Counsel," *Christian Counseling Ethics*, ed. Randolph K. Sander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7), 49-52를 참조하라.

<sup>31</sup> 의사가 "본인의 판단으로는 환자가 모르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가족주의적인(paternalistic) 표현으로 흔히 인용되는 것은 전문 정신치료사가 "환자의 유익을 위해서" 성적 행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교인의 자유(freedom)가 문제임을 지적하고, 두 당사자들간에는 파워가 불균형하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교인의 자유는 제한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짐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간단히 논했듯이 목회자는 교인들과 달리 직업상 전문가로서의 파워와 권위가 있고 상징적인 힘까지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경우 성적 행위를 수반하는 상황에서 교인들이 자유롭게 동의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짐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 쪽은 전문가이고 다른 한 쪽은 비전문가인 관계에서 유일한 문제는 비전문가가 자유로이 동의할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비록 비전문가인 교인이 성 관계를 주도할 때에라도 그녀 또는 그가 자유로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전문가가 비전문가를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인들이 자유롭게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가? 두 저자는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들에 의하면 아마 미혼 여성도는 미혼 남성 목회자의 데이트 요청에 대해 자유롭게 동의하여 교제하고 궁극적으로 결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미혼 남자 성도와 미혼 여성 목회자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저자들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엄격한 몇 가지 지침들 곧, 그 교인을 위한 다른 목회자의 돌봄을 조치해 두는 것, 두 사람의 데이트하는 교제의 관계에 관해 교회 지도자나 목회관계 위원회에 알림, 목회자의 전문 직무수행에 관해 정직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 관계 당사자인 목회자가 자신의 동료 전문가/목회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촉진하는 것 등의 엄격한 지침을 제공한다. 그러나 Pamela Cooper White은 Lebacqz와 Barton의 책에 대한 서평에서 다음의 점을 지적하며 비판한다. 비록 그런 관계일지라도 두 사람이 궁극적으로 결혼으로 끝내지 않을 때에 쌍방이 입을 수 있는 상처는 상당하며 교구리는 공동체내에서의 분리의 가능성 또한 크다. 따라서 목회자들이 비록 미혼일지라도 교회의 성도들과 데이트하는 관계는 금하여야 한다는 규칙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sup>32</sup>

상기의 관점들을 목회자에 의한 성적 학대문제에 있어서 힘(power)의

문제를 남성의 입장에서 다루었다면, 같은 문제를 다룬 또 하나의 학자는 Candace R. Benyei이다. Benyei는 여성신학자로 결혼과 가족치료 전문가이기도 하다. Benyei는 목회자와 성도간의 성적 관계에 내재하는 힘의 불균형을 자포자기의 힘(the power of abandonment), 권위의 힘(the power of authority) 및 동물적 힘(animal force)의 면에서 논한다.<sup>33</sup>

Benyei는 자포자기의 힘을 다음과 같이 논한다. 영적이고도 심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대개 자신이 갖고 있는 힘보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 월등히 강하다고 판단될 때 자신의 힘과 그 힘을 교환한다 곧, 자신의 힘을 보다 가치 있어 보이는 어떤 것과 교환하기 위해 양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환을 통해 얻는 것은 안정감 또는 적어도 안정에 대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 예로 Benyei는 남편의 학대를 견뎌내는 아내의 예를 든다. 여자가 남편의 학대를 정면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그로 인해 남편이 가정을 떠난다든지 또는 재정적 지원을 잃게될 위기를 겪게 될까봐서이다. 이런 식으로 아내로서의 힘이 약한 여자는 자신의 개인의 힘(personal power)과 인간됨(personhood)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적 안정감을 얻는다. 실직의 위협, 취업의 기회제공 등에 기초한 이러한 강압과 유혹은 경제적/직업적 복리뿐만 아니라 안정에 대한 피해자의 환상적 갈망을 이용하는 힘의 이기적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은 인정받으며 특별한 돌봄과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자신의 힘을 포기하기도 한다. 목회자는 영적 아버지 또는 하나님과 신앙공동체의 대표자 및 그와 비슷한 이유 등으로 특별한 사람들로 인정된다.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로부터의 특별한 인정과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소중히 여긴다. 사랑에 굶주린 나머지 영적 및 정신적으로 공허한 개인에게 그러한 특별한 관심은 비록 그것이 성욕적 대상화라는 부적절한 것일지라도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다.

<sup>32</sup> Pamela Cooper White, "Review," *The Christian Century* (April 1, 1992),

<sup>33</sup> Benyei, *Understanding Clergy Misconduct*, 64 65.

이러한 두 가지, 경제적이고도 감정적 상황들이 힘의 자포자기적 배경을 설명해준다.

권위의 힘은 억압적인 가정에서 자신의 의사와는 반대로 어른들에게 특히, 부모들에게 “아니오”(No)라고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못한 채 자란 성인의 경우 비슷한 영적 권위의 인물인 목회자에게 불편한 행위나 처사에 관해 반대의사 표시를 못하는 배경을 설명한다. 이들에게는 “아니오”라고 말 할 수 있는 능력이 마비되어 버린 것이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종종 궁극적으로 신뢰하는 목회자의 뜻을 행하는 것과 혼동되어 버릴 수 있다.”<sup>34</sup> 또한 강간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죽음 또는 상해의 위협을 가하는 야만적인 동물적 힘(animal force)이 있다. 유기체로서 인간은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으므로 반드시 저항해야할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굴복하여 종종 피해자가 된다. 이러한 동물적 힘은 종종 억압과 결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 혹은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자포자기적 비밀을 지킴으로 영적 및 심리적 힘을 포기해버리게 만든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목회자의 성희롱, 학대, 또는 강간 행위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은 대체로 이 문제를 권한의 남용이란 관점에서 비판한다. 본인이 볼 때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로 정리할 수 있겠다.

#### 라. 윤리적 분석과 비판

목회적 차원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어느 누구도 회중, 내담자, 학생 등과 성적 접촉 또는 성욕적 행위를 갖는다면 그것은 직업상의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왜 목회자가 그 또는 그녀가 봉사하거나 지도하는 어떤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잘못된가? 그것은 이런 상황(context) 속에서의 성적 활동 그 자체가 착취적이고 학대적이기 때문이다.

첫째, 그것은 역할의 위반이다. 목회 관계는 어떤 역할 면에서의 기

<sup>34</sup> Ibid., 65.

대사항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곧, 목사 또는 상담자는 어떤 자원들, 재능들, 지식 및 전문성을 회중, 내담자, 동료 참모들, 실습학생 등의 최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역할 기대가 있다. 성적 접촉은 목회적 및 전문적 역할의 부분이 아니다.

둘째, 그것은 권위와 힘의 오용/남용이다. 목사와 상담자의 역할에는 권위와 힘이 있으며 이 힘을 그 목사/상담자의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책임이 수반된다. 이 힘은 한 전문가가 의도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회중, 내담자, 기타의 사람 등과의 성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추구하기 위해 사용할 때와 같은 경우에서와 같이 쉽게 오용될 수 있다. 비록 목회적 돌봄의 관계를 성적 관계화한 자가 회중일지라도 목회관계의 경계를 유지하고 성관계를 추구하지 않을 책임은 목사/상담자에게 있다.

셋째, 그것은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회중, 내담자, 고용인, 실습학생 등은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한 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목사/상담자 보다 연약한 입장에 있다. 목사/상담자가 이러한 약점을 성적 접촉의 구실로 이용한다면 그것은 약자를 피해로부터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명령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다. 고아나 과부 등 약한 자를 보호해 주는 것은 유대 기독교 신앙 전통이 고수해 온 관행이다.

넷째, 그것은 의미 있는 동의의 부재에 해당한다. 성적 활동에 대한 의미 있는 동의는 선택의 상황을 요할 뿐 아니라 또한 상호성과 동등성의 상황도 요한다. 따라서 의미 있는 동의는 두려움 또는 가장 미세할 정도의 억압도 부재할 것을 요한다. 목회자와 그 목회자의 돌봄을 받는 개인 사이에는 언제나 힘이 불균형하며 그래서 불평등하다. 자신을 “책임적인 동의”를 할 수 있는 성인들로 보는 두 개인들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할의 차이는 의미 있는 동의의 가능성을 가로막는다.

상기의 네 가지 요인들의 간단한 분석에 공통적인 것은 목회자와 교인간의 신뢰성의 배신이다. 목회 또는 상담관계의 중요한 경계들이 침

해당했으며 그 결과 신뢰의 배신이 발생한다.

보수주의 진영에서든 자유주의 진영에서든 성에 관한 전통적 윤리는 목회자와 성도들간의 성적 행위 문제를 다루는 데는 소홀해 왔다. 보수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언제나 간음, 곧 목회자의 결혼 밖에서의 성적 행위에 개입된 혼외정사라는 구도에서 보아왔다. 이러한 관점은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근친 상간적 학대를 간음으로 짜 맞추는 결과를 낳는다. 결혼한 목회자가 성도들 중의 한 명과 성 관계에 개입되었다면 그것은 물론 간음을 범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 간음은 반드시 주요한 윤리적 문제, 곧 직업상의 비행과 목회관계의 경계들을 위반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간음은 하나의 주요 문제이며 그 목회자의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야기한다. 그러나 그 목회자가 자신의 전문 직업상의 역할로 끼친 손상에 비해서는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자유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논하는 데 전혀 주저해 왔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일부 교단들은 목회자의 개인의 사생활, 곧 성생활에 대해 교회나 회당의 개입을 제한시키는 노력을 보여왔다. 그리하여 지배적인 규준은 “판단 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와 “성은 당신이 사랑하는 어느 누구와 함께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입장의 결과는 자유주의 교회에는 목회자와 여자 교인간의 성적접촉에 관해 직업상의 윤리가 없는 셈이 되고 말았다. 작금에 와서는 양 진영들 모두 회중, 내담자 등과의 목회자의 성적 관계 문제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교회내의 성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목회자의 목회활동 전반에 걸쳐 비행을 다루는 연구 자료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확장 일로에 있다.

### C. 목회자에 의한 성적비행/학대가 발생할 때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이란 불의와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상처들을 치유할 수 없다.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더해야 한다. Marie Fortune은 다음의 질문들을 제기한다. “왜 우리가 불의에 반응하여야 하는가? 언제 마음의 감동을 받아 부당한 힘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또한 상처들을 치유하려고 하여야 하는가?”<sup>35</sup> 그에 대한 해답은 우리에게는 정의와 자비를 행하라는 도덕적 명령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Fortune에 의하면 이 명령은 3가지 근본적인 가정 위에 기초해 있다.

첫째, 우리는 수동적이고 불개입적 자세보다는 불의를 직면하여 행동(act)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sup>36</sup> 둘째, 구현(embodiment)은 우리가 인체의 존엄성에 대한 위반을 중요하게 다룰 것을 요구하는 존재의 중요한 사실이다.<sup>37</sup> 셋째, 사람들간의 관계는 주요한 가치가 있다.<sup>38</sup>

Fortune은 여기에다 여성신학과 해방신학에서 나온 원리에 기초하여 다음의 두 가지를 더한다.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이 살아온 경험과 더불어 시작하여야 하며 힘이 없어 피해를 당하는 측을 편들어야 한다.

<sup>35</sup> Fortune, *Is Nothing Sacred?*, 112.

<sup>36</sup> Beverly Harrison, *Making the Connections* (Boston: Beacon Press, 1985), 8 12. Fortune, *Is Nothing Sacred?*, 112에서 재인용.

<sup>37</sup> Harrison, *Making the Connections*, 12 15. Fortune, *Is Nothing Sacred?*, 12에서 재인용.

<sup>38</sup> Harrison, pp. 15 21. Fortune, 12에서 재인용. Fortune은 다음의 책들을 소개한다. Carter Heyward, *The Redemption of God: A Theology of Mutual Relation* (Washington, D.C.: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2); Carol Gilligan,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Margaret Farley, *Personal Commitments*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6).

이러한 가정들과 원리들은 함께 불의가 낳은 결과들에 반응할 것을 명령한다.”<sup>39</sup>

### 가. 공의의 공동체를 지향함

만약 우리가 목회자 또는 목회상담자의 성적학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자원으로서 성경에 기초한 우리의 신학에 의지한다면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미가서<sup>40</sup>를 비롯한 성경에서 우리는 약하고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강한 자들은 반드시 도전하시고, 학대자를 처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피해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우리들을 위한 그 분의 뜻에 관해 배운다.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마땅히 좇아야 할 정의로운 공동체 건설의 국면들이다.

다른 사람이 입은 손상에 반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다른 자료는 여성신학과 해방신학에서 얻은 통찰력에 따라, 피해자들과 생존자들에게 귀기울이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물으면 그들은 자신들의 치유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다. 이들이 주로 말하는 내용은 다음의 것들과 비슷하다.<sup>41</sup>

나는 그에게 그 짓이 나에게 끼친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가 자신이 한 짓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지기를 원해요.

나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는 이 짓을 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해주고 싶어요.

<sup>39</sup> Fortune, 112 113.

<sup>40</sup>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 6:8).

<sup>41</sup>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Jan Frank, *Door of Hope*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95)을 참조하라.

나는 그가 나의 치료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해요.  
 나는 그의 이름이 신학교 건물에서 삭제되기를 원해요.

이러한 것들은 피해자들과 생존자들에게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주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행동들이다. 상기의 것들은 행정가, 치료사, 지지자, 및 목회자로서 우리들이 피해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정의의 행동들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정의로운 공동체 형성을 조장하며 여기에는 다음의 국면들이 포함된다. Fortune은 다음의 7단계들 또는 국면들을 소개한다.<sup>42</sup>

- ① 진실을 말함: 생존자가 그 또는 그녀 자신의 스토리를 말할 기회
- ② 승인: 생존자의 말을 들었고 믿으며 일어난 일이 잘못임을 기관이 확인함
- ③ 동정: 기꺼운 마음으로 생존자와 함께 고통을 겪는 것으로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님
- ④ 약자의 보호: 다른 이에게 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필요한 조치라도 취함
- ⑤ 학대자의 책임: 회개와 치유가 가능해지도록 학대자를 소환하여 해명하게 함
- ⑥ 손해배상: 치료와 의료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생존자에게 물질을 지불함
- ⑦ 설욕: 피해로 초래된 상흔들과 기억들의 짐으로부터의 해방

#### 나. 용서의 문제

목회적 돌봄과 상담 및 결혼과 가족치료에 관한 분야에서 목회자들과 대화할 때 부닥치는 가장 답답한 문제들 중의 하나는 용서에 관한 분야이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용서가 하나의 과정(process)이며 용서의 선포는 이 과정 중에서 마지막 단계임을 모르고 있다. 어떤 피해를 입

<sup>42</sup> Fortune, *Is Nothing Sacred?*, 112 118.

은 흔적이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최초의 반응은 “용서해 주고 잊어버려”라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분석한다면, “우리(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자들)는 이 일에 관해서 알고 싶지 않으며 그것에 관해 어떤 것도 해야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우리 그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것인 양 할 수 없어?”이다. 이러한 반응으로는 어느 누구도, 피해자/생존자는 말 할 나위도 없고 가해자 자신도, 도움을 입을 수 없다. 이것은 값싼 은혜(cheap grace)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으로는 결코 회개와 치유에로의 여정으로 인도할 수 없다.

본인이 미국 유학 중 임상훈련을 받은 경험을 통해 그리고 과거 성폭행 이력이 있는 환자들을 치유하는 전문가들의 임상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음의 도전을 받는다. 과거의 가해자들이었던 환자들이 하는 말이다. “당신이 목회자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그들에게 말하여 주시오, ‘우리를 너무 빨리 용서해주지 말라고...’” 이들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너무 빠른 용서는 이들이 저지른 죄악과 이들이 초래한 상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데 계속 이바지하였을 뿐, 결코 그들의 회개와 성장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 피해자들과 생존자들의 말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은 공의가 필요할 때 무시되면 오히려 피해자들은 한층 더한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신앙공동체로부터의 버림받음이라는 상처이다. 그런데 이 상처는 어떤 피해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성경에 등장하는 용서의 구절들을 대인간의 힘(power)을 염두에 두고 분석해볼 때 대인간의 용서는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는 자보다 힘이 더 강하거나 또는 동등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용서”란 단어의 가장 일반적인 뜻은 “부채를 면제해 주다”(to forgive a debt)에서처럼 상업적인 뜻이 담겨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또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다른 사람을 채무, 어떤 의무, 위약금, 혹은 형벌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죄의 용서는 죄나 채무의 형벌로부

터 해방시켜주는 것과 관계 있다.

신앙적 콘텍스트에서, 용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또는 예수님에 의한 죄의 용서란 측면에서 논해지고, 사용되는 단어들은 거의 언제나 법정적이거나 상업적으로 함축된 의미가 담겨 있다.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해주는 것을 논하는 성경 구절들은 거의 없다. 주기도문에 두 사람이 서로 간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관련 구절이 있다면, “...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sup>43</sup>일 것이다. 이 구절은 용서에는 계급적인 조직, 곧 가장 강한 자로부터 가장 약한 자에게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임을 보여준다. 우리는 궁극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보다 힘이 적은 자들이 우리에게 빚진 채무를 우리가 탕감해준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채무들도 탕감해 달라고 간구한다. 상업상의 의미에서 유추해 볼 때 돈을 대출해 준 채권자는 돈을 빌린 채무자보다 우세한 권세(또는 힘)가 있으며 그래서 채무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보다 우세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서로 동등한 힘을 가진 사람들 간의 용서를 언급하는 구절들이 둘 있다.<sup>44</sup>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기서 서로 동등한 파워를 가진 두 사람간의 용서에 관한 지침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용서는 첫째, 범죄자에 대한 직면(confrontation),<sup>45</sup> 둘

<sup>43</sup> 이 구절의 영어는 “...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죄”에 대한 영어 단어는 “debts”이고, “우리에게 죄지은 자”는 “our debtors”이다.

<sup>44</sup> 마 18:21 22 및 눅 17:3 4.

<sup>45</sup> Genkins에 의하면, 대면(또는 직면, confrontation)이란 “치료적

째, 범죄자의 회개와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바로 이것이 만약 (가해자측에서의) 진정한 회개가 있을 경우에 (피해자측에서의) 용서가 발생할 수 있는 정의를 이루는 콘텍스트이다. 그리고 회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지성을 갖는 (마음과 행위의) 변화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다시 말하여 그분의 권위와 존엄을 버리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 향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시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는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서야말로, 만약 예수께서 약자가 강자를 용서해주시기를 바라셨다면 그 뜻을 표시하셨을 수도 있을 하나의 장면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뜻을 표시하시지 않으셨다.

목회자와 목회상담자로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함축된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에는 힘이 약한 자가 힘이 강한 자를 용서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대하거나 암시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렇다면, 목회자의 학대를 받은 피해자 곧, 목사보다 못한 자원들을 갖고서 목회 관계에 들어간 자 그 목회관계를 통해 받은 상처와 학대로 더욱 힘이 약해진 피해자가, 자신을 학대한 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사항이 아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손해의 배상, 안수 또는 자격증과 같은 지위와 역할의 포기, 학대에 대한 사실 인정과 그에 대한 책임 등에 의해 가장 잘 수행된다. 이러한 것들은 피해자/생존자에게 능력을 부여하고 정의를 설립하는 회개의 행동들로 그때에야 비

---

상황에서 내담자로 하여금 그 또는 그녀 자신의 감정들과 행위의 외면한 국면들을 정면으로 맞서게 하는 것이다. 통상적인 목적은 자기 이해, 현실의 명료화 및 내면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대면은 주로 내담자의 내면세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목회상담자는 자기(self)의 회피한 국면들과 관계 맺도록 조심스럽게 내담자의 편의와 준비에 관심을 기울이며 대면의 수단으로서 명료화, 해석 및 개입을 사용한다.” G. P. Jenkins, “Confrontation,”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0), 213.

로소 용서가 하나의 가능성이 된다.<sup>46</sup>

인자와 공의가 지배하는 사회를 이루려면 힘(power)에 대한 몇 가지 근본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히브리인 공동체에 주어진 명령은 강자와 약자간의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되라는 명령이기도 하다.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행사한다. 목회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의존성을 증가시킴으로 사람들을 이용하는 식이 아니라, 보다 많은 자원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힘, 그것의 한계와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한 이해가 목회 또는 목회상담 수행에 근본적이다. 그래야 만이 회중들, 내담자들, 학생들, 동료들의 유익을 위한 돌봄의 목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예방

마지막으로 예방을 위한 제안이다. 예방에는 목회자 또는 목회상담자들에 의한 성폭력에 관해 분명한 방침의 마련, 온갖 수준의 목회에 관련된 교육,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한 개인적 차원의 자기 돌봄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교단차원의 윤리강령 필요

교단 또는 전문 조직들은 목회자나 평신도 전문 사역자들의 회중들, 내담자들 등과의 성적 접촉을 비윤리적이며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을 선언하는 분명하고도 명백한 강령을 만들 필요가 있다. 선언문의 내용은 직업상의 행위상 특징이 될 만한 요소들(parameters)에 관해서는 확실히 할만큼 충분히 구체적이고 특정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 특정적인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혼동과 조치에 대한 망설임을

<sup>46</sup> 용서에 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John Patton, *Is Human Forgiveness Possible?* (Nashville: Abingdon Press, 1985)을 참조하라.

유발할 수 있다.

## 2. 교육과 훈련

신학교와 모든 목회자 및 목회상담자들은 경계들, 이중 관계들, 성, 적절한 위임, 스트레스 등을 다루는 심층적인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목회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기적인 양질의 상담(consultation) 및/또는 수퍼비전(supervision)을 추구함으로 자신과 내담자/성도의 기제들(mechanism)에 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미국 6개 주에 걸쳐 남침례교단 소속 담임목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스트레스와 목사의 성적 비행은 상당할 정도로 서로 관련이 있으며, 자신이 받은 훈련에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목사는(예로, CPE 훈련을 받지 않은 목사들) 자신감이 있는 목사들보다 성적 비행에 개입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47</sup>

## 3. 자기 돌봄(self care)

모든 목사들/상담자들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업상의 양면에서 자기 돌봄에 대한 자신들의 관심을 정기적으로 감시해볼 필요가 있다. 상담 과정에서의 인도는 여기서 지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sup>47</sup> Jeff T. Seat, James T. Trent, and Jwa K. Kim, "The Prevalence and Contributing Factors of Sexual Misconduct Among Southern Baptist Pastors in Six Southern States,"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Vol. 47, No. 4 (Winter, 1993), 363-371. 동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목회자들의 신체적이고 정신적 건강뿐만이 아니라 행동 건강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목회자들의 스트레스의 대부분은(개인적 및 직업상의) 경계(boundaries)에 대한 이해 부족, 자기 주장 결여 그리고 친밀함(intimacy)과 같은 그러한 이슈들에 대해 자기 유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목회자들의 목회의 전반적인 영역들에 대한 이해와 훈련 부족을 말해준다.

#### 4. 기타

Candace R. Benyei는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자로서의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이들이 안수를 받기 위해 지망할 때에 반드시 심리검사(psychological testing)를 통해 적격심사(screening)를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목회자의 자기 돌봄에 대한 인식 훈련(awareness training) 및 성적 희롱, 추행, 학대 및 폭행들에 관한 적절한 지침을 통해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목회자들의 인식 증가를 위한 교단 차원의 교육과 훈련을 제안한다.<sup>48</sup>

예방은 목회자들과 목회상담자들이 목회 관계의 경계를 위반하는 위험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사람의 영혼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빚을 수 있는 무의식적으로 범하는 경계의 침해를 막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방은 이미 성중독자와 성적 약탈자가 된 목회자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유일한 예방은 그러한 환자를 목회일선에서 제명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길밖에 없다. 예방이 실패할 때 우리는 반드시 정의를 추구하고 마침내는 모든 관련자들의 치유를 위한 개입의 과정을 기꺼운 마음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sup>49</sup>

## 결론

필자는 본고를 거의 마무리 할 무렵 다음의 글을 입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필자가 성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듣고 싶지 않은 고민을 털어 놓는 청소년들이 간혹 있다. 그것은 목회자의 성폭력 상담이다. 소문

<sup>48</sup> 보다 자세한 내용은 Benyei, 157-161을 참조하라.

<sup>49</sup> 그 한 가지 방법으로 목회자로서 우리는 성도들이 목회자들이나 동료교인들로부터 성적 희롱, 비행 및 학대를 당했을 때, 교회 내에서 “말할 수 있을”(speakable) 정도의 분위기와 자유스런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겠다. William V. Arnold, *Pastoral Responses to Sexual Issues*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3), 112.

으로만 들을 수 있었던 목회자의 성폭력이 그것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sup>50</sup>

홍 목사는 간혹 목회자들이 성인인 교인들과 문제를 일으키는 소문을 듣기는 해도 어떻게 청소년들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개탄해 한다. 이런 현상은 이제 한국의 목회자들, 작게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목회자들에게도 “성적 폭력/학대”가 강 건너 불이 아님을 경고해 준다고 하겠다.

지면관계상 본고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한 분야들 곧, 인간관계나 자아 “경계”(boundaries)의 문제, “목회적 돌봄에 있어서의 성적매력,” “상담에 있어서의 전이와 역전이,” 특히 성적 전이에 관한 문제 등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본고에서 약간 다루었지만 권한의 남용(또는 학대, the abuse of power)에 관한 주제는 향후 보다 건강한 목회를 염원하는 모든 목회자들은 반드시 연구, 숙지해 둘만한 가치가 있는 분야일 것이다.

---

<sup>50</sup> 홍진표, “성폭력 그리고 성직자,” 『침례신문』(2000년 7월 4일), 제6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의 교목인 필자는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놀라 반항조차 못함”을 소개하고, “하늘 아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한탄하면서 고발한다.